

**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** (제30조제1항 관련)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징금 금액(단위: 만원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정지<br>1개월    | 영업정지<br>3개월 | 영업정지<br>6개월 |
| 1.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| 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                  | 2,000          | 5,000       |             |
| 2.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| 법 제19조의4 제1항제4호                  | 2,000          | 5,000       | 10,000      |
| 3.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| 법 제19조의4 제1항제5호                  | 2,000          | 5,000       | 10,000      |
| 가.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,000       | 10,000      |
| 나.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4.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| 법 제19조의4 제1항제6호,<br>같은 조 제2항 제1호 | 1,000          | 3,000       | 5,000       |
| 5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        | 법 제19조의4 제2항제3호                  | 2,000          | 5,000       | 10,000      |
| 6.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0조의4 제1항제3호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5,000       |
| 7.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| 법 제20조의4 제1항제4호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| 2,500       | 5,000       |
| 가.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2,500       | 5,000       |
| 나.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8.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0조의4 제1항제5호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가. 영 별표 1의5 제1호부터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| 2,500       | 5,000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나. 영 별표 1의5 제8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500 |       |
| 9.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0조의4 제1항제6호 | 5,000 이내<br>(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상) |       |       |
| 10.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노를 수집·운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9조제1항 제4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,000 |
| 가. 수집·운반한 분노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나. 그 밖에 수집·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| 3,000 |
| 11.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9조제1항 제2호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| 3,000 |
| 12.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 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9조제1항 제2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| 3,000 |
| 13.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9조제1항 제5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가.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|       |
| 나.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|       |
| 다.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|       |
| 14.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노수집·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| 법 제49조제1항 제6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,000 |
| 15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9조제1항 제7호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| 3,000 |
| 16.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노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9조제1항 제8호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00 | 3,000 |

비고: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.

1.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정도 및 횟수

---

2.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